

NAFTA와 通商紛爭의 解決

1993. 10.

연구자 : 정상조(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분석」은 외국법제의 해설과 입법동향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입법관계자의 입법활동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일반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목 차

I. 序 論	5
1. NAFTA협정의 중요성	5
2. NAFTA협정 연구의 필요성	6
II. NAFTA협정문의 주요내용	7
1. 총론적 내용	7
2. 협 의	8
3. 패널 절차	9
4. 패널보고서	10
5. 國內節次와 私的인 商事紛爭解決	11
III. 우리의 대응방안	12
1. NAFTA협정의 評價 및 문제점	12
2. 통상협상에의 積極的 참여	13
3. 통상분쟁의 事前防止	14
[자 료] 기구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16

NAFTA와 通商紛爭의 解決

I. 序 論

1. NAFTA협정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國際化時代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국제적 통상환경 또는 경제블록화되어 가는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념대립이 종료됨에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바, 유럽공동체는 수년전부터의 경제통합작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北美自由貿易協定(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체결되어서 199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며, 아시아에서는 亞太經濟協力(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올 11월 20일에는 한국과 미국등의 정상들이 미국 시애틀에서 APEC頂上會談을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적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관련된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통상협정의 체결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APEC무역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중 가장 커다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對美輸出이 전체 수출의 23.6%에 해당됨)은 이미 NAFTA협정을 체결하여 북미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NAFTA협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이미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¹⁾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소위 NAFTA협정(北美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1)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CUSFTA) 1988

가에 대하여는 미국내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NAFTA로 인하여 미국이나 멕시코의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고 다른 상대방 국가는 이익을 보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관계가 아니라,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NAFTA체약국 모두가 수출이 확대되고 부수적으로 상당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하는 분석에 입각하여, NAFTA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는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용이하여질 것을 기대하여 製造業이活性化되고 그러한 기대심리는 벌써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로 멕시코와 미국간의 교역량은 1992년 현재 약 400억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미국으로서는 멕시코에 기계류와 각종 제조장비 및 기타의 자본재를 수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멕시코에의 資本의 移轉 등의 直接投資도 증가하여 멕시코가 필요로 하는 자본의 조달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실제로 자본이전이 급증하여 1992년 현재 멕시코에의 자본이전이 약 180억달러에 달했다.²⁾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NAFTA의 체결로 인하여 급변하는 상황은 없겠지만, 멕시코라고 하는 시장과 투자지역이 추가적으로 자유무역지역내로 들어오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과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2. NAFTA협정 연구의 필요성

NAFTA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당해 협정체약국 사이에서는 무역이 자유화되고 교역의 증대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체약국이외의 국가들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도 NAFTA협정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방법³⁾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NAF-

2) G.C. Hufbauer and J.J. Schott, NAFTA: An Assessment(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3), p. 4

3) 제3국은 NAFTA협정 제2205조에 따라서 NAFTA자유무역위원회와 협상하여 가입할 수 있다.

TA협정 체약국내에 직접투자를 하여 체약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NAFTA협정에 관한 깊이있는 검토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특히 NAFTA협정을 둘러싼 통상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APEC무역자유화의 경우에도 NAFTA협정은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NAFTA협정에 관한 검토와 연구는 더욱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NAFTA협정은 농산물과 에너지를 포함한 상품의 교역, 상품교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쟁해결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크게 나누면 무역자유화를 위한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적 규정들은 19장에 걸친 방대한 분량이므로 추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미국과의 통상분쟁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통상분쟁해결에 관한 NAFTA협정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여기에서는 NAFTA협정의 관련 규정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NAFTA협정문의 주요내용

1. 총론적 내용

NAFTA협정의 통상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은 주로 캐나다-미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그것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위원회(이하에서는 “위원회”라고 약칭함)가 구성되어, 당해 위원회가 NAFTA협정에 관한 행정적업무를 담당하고 나아가 그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한다.⁴⁾ 위원회는 특히 패널절차를 위한 모범규칙을 제정하고, 분쟁해결과정에서 분

4) NAFTA협정 제2001조

쟁당사국들을 위하여 주선·조정·중개를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국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감독한다.

NA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NAFTA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체약국간 분쟁의 예방 또는 해결에 적용되고 특히 특정 체약국의 조치가 NAFTA협정의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NAFTA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통상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의 다른 통상협정 특히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NAFTA분쟁해결절차가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GATT분쟁해결절차와 병행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NAFTA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동시에 GATT해석 및 적용이 문제된 분쟁사안의 경우에, 분쟁당사국은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것인지 아니면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⁵⁾ 그러나, 사람,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체약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NAFTA협정의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GATT분쟁해결절차보다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협 의

분쟁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Consultation)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협의절차는 분쟁당사국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분쟁당사국이 아닌 제3체약국도 협의대상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제3체약국도 서면청구를 통하여 이러한 협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상하기 쉬운 농산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협의는 청구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은 정보제공 및 비밀정보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해야 한다. 즉, 체약국들 특히 분쟁당사국들은 NAFTA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관한 완전

5) NAFTA협정 제2005(1)조

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

협약에 참가한 계약국들이 원칙적으로 30일이내⁶⁾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는 소집되고 즉시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국들이 상호만족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고문을 위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무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주선·조정·중개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도록 한다.

3. 패널 절차

위와같이 분쟁당사국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이내⁷⁾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를 청구한 계약국은 서면신청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의 구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송부된 후 즉시 위원회는 패널을 구성하도록 하고, 분쟁사안에 대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3의 계약국도 서면 통지에 의하여 패널절차(Panel Procedure)에 참가할 수 있다.

계약국들은 패널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30명의 패널위원 후보에 관한 명부를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패널위원후보명부에 등재될 위원후보는 계약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3년의 임기로 선임되면 재임될 수 있다. 패널위원후보는 법률, 국제무역,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객관성, 신뢰성과 공정한 판단력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또한, 패널위원후보는 어떤 계약국과도 독립적이며, 특수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특정

6) NAFTA협정 제2007조: 상하기 쉬운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단기의 시한이 정해져 있다.

7) NAFTA협정 제2008조: 예외적인 시한도 규정되어 있음.

체약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5명의 위원으로 패널이 구성되는 것으로 하고,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의 구성 신청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패널의 위원장 선임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해 기간내에 위원장선임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천에 의해 결정된 일방 분쟁당사국이 5일내에 자국민이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각 분쟁당사국은 타 체약국의 국민으로부터 2명의 위원을 선임한다.⁸⁾

4. 패널보고서

패널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분쟁당사국들의 동의하에 사실문제에 관한 과학심의위원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패널은 이러한 조언과 보고 그리고 분쟁당사국들의 주장내용과 제출서류를 토대로 하여, 최종 패널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를 작성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제출해야 한다. 패널의 최초보고서는 분쟁사안에 대한 사실판단 뿐만 아니라 분쟁대상이 된 조치가 NAFTA협정의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패널의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내에, 분쟁당사국은 당해 최초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⁹⁾

패널은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작성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제출해야 한다. 패널의 이러한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에 전달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교부받은 후, 분쟁당사국들은 분쟁의 해결에 합의해야 하고, 그러한 분쟁해결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결정 및 권고에 합치하는 내용의 분쟁해결이어야 하며, 합의된 분쟁해

8) NAFTA협정 제2011조 내지 제2013조

9) NAFTA협정 제2016조

결내용을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NAFTA협정을 위반한 분쟁당사국이 상호만족할 만한 분쟁해결방안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을 신청한 분쟁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NAFTA협정상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편익을 당해 위반국에 적용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다. 패널보고서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편익정지는 원칙적으로, 패널이 NAFTA협정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특정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부문과 동일한 부문에서의 편익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¹⁰⁾

5. 國內節次와 私的인 商事紛爭解決

NAFTA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NAFTA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GATT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어 있지만,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 법원 등에 협정위반국에 대한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절차는 허용될 수 없다.¹¹⁾ 다른 한편, 체약국간의 분쟁이 아니라 私人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국제상사중재 또는 기타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중재에 의한 사적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체약국은 중재계약의 준수를 확보하고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체약국이 1958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정”과 197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정”에 가입하고 있거나 그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에 관한 국내법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간주된다.¹²⁾

10) NAFTA협정 제2018조 및 제2019조

11) NAFTA협정 제2021조

12) NAFTA협정 제2022조

Ⅲ. 우리의 대응방안

1. NAFTA협정의 評價 및 문제점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는 전반적으로 외교적인 분쟁해결보다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내에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둠으로써, 기존의 GATT분쟁해결절차보다 훨씬 더 司法的인(rule-oriented) 분쟁해결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의, 위원회 개입, 패널절차 등에 관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분쟁해결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이 보인다. 사법적인 분쟁해결절차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농산물과 에너지를 포함한 상품의 교역, 상품교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 기술장벽(TBT),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 관한 NAFTA협정문의 규정내용이 상세하고, 체약국의 완전한 합의와 이행의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캐나다로서는 이미 수년전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상당한 준비를 했고, 멕시코로서는 긴급히 협정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주요한 준비는 바로 NAFTA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말하는 것이다. 상품교역, 원산지규정, 기술장벽,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 관한 NAFTA협정의 규정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체약국은 NAFTA협정의 위반으로 되고 체약국간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NAFTA협정의 규정내용에 따라서 국내법이 정비된 경우에도 체약국의 그러한 협정이행이 다른 체약국이 보기에 NAFTA협정상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있으면, 여전히 NAFTA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가 원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NAFTA협정의 중요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체약국간의 분쟁은 원칙적

으로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하고, 물론 GATT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해결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분쟁 당사국인 체약국의 국내법절차에 의하여 상대방 분쟁당사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즉, NAFTA협정은 체약국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私人에게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체약국 정부사이에 해결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이 곧 미국의 통상법에 의하여 체약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national laws)에 의하여 미국 국민의 권리구제를 해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체약국으로서는 미국 정부가 국내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재하거나 미국 국민에 의한 사적인 구제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가 기존의 통상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사법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유사한 것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고 다른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위 재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심절차가 통상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패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분쟁당사국을 설득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¹³⁾

2. 통상협상에의 積極的 참여

이상에서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듯이, 통상협상과 통상분쟁의 해결은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의 장막뒤의 타협에 의하여 또는 이념적 우방이라는 명분하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3) G.C. Hufbauer and J.J. Schott, NAFTA: An Assessment(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3), p. 142 참조

각국의 이해관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엄격한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제적인 통상에 관한 實體法的 및 節次法的 국제규범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10년간 한미통상협상을 통해서 잘 보았듯이, 선진 강대국과의 兩者協商에서는 대단히 불리한 지위에 놓이고 되고, 따라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처지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얻은 교훈은 되도록 많은 국가들을 포함시킨 多者協商을 통하여 통상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보다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통상문제에 관한 실체법적인 규범마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절차법적 국제규범의 마련에 있어서도 되도록 多者體制 (Multilateral system)를 통하여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루구아이라운드협상이나 亞太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통상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多者體制에 의한 통상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하도록 국제적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새로이 모색되는 국제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GATT분쟁해결절차, 우루구아이라운드협상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평가한 바와 같이 NAFTA협정의 분쟁해결절차는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분쟁해결절차보다 상당히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충실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 진전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의 통상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마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통상분쟁의 事前防止

NAFTA협정의 통상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은 통상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은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미리 방지하

기 위한 입법적 및 행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즉,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는 요인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및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요인들도 상당수 있을 것인 바, 그러한 요인들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통상마찰도 줄이고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를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된 법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국제규범도 참조해야 하고 국내산업의 현황에 맞추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 료 : NAFTA협정문 번역]

제20장 기구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기 구

제2001조 : 자유무역위원회

1. 체약국들은 본 장에 의하여 자국의 각료급 대표 또는 이들의 지명인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이하에서는 “위원회”라고 약칭함)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a) 본 협정의 시행을 감시하고,
 - (b) 본 협정의 구체화작업을 감시하며,
 - (c)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 (d) 본 협정에 따라 설치되었고 부속서 제2001.2조에 언급된 각종 위원회와 실무작업단(working groups)의 활동을 감시하며,
 - (e)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점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 (a) 임시적 또는 상설적인 위원회, 실무작업단,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있고,
 - (b) 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한
 - (c) 그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고 체약국들이 동의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규칙과 절차를 제정한다. 위원회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된다. 정기회의의 의장은 각 체약국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제2002조 : 사무국

1. 위원회는 각국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감시한다.
2. 각 체약국은 사무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a) 자국담당 부서에 상설직을 둔다.
 - (b)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 (i) 자국담당 부서의 운영과 유지경비
 - (ii) 부속서 제2002.2조에 규정되고 본 협정하에 설치된 위원회와 과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패널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를 지급
 - (c) 자국담당 부서의 행정과 관리를 전담할 간사를 임명한다.
 - (d) 자국담당 부서의 사무실 위치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3.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a)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 (b) 다음 조직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i) 제1908조에 따라 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제19장(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재심 및 분쟁해결)에 의해 설치된 패널 및 각종 위원회
 - (ii) 제2012조에 따라 제정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본 장에 의해 설치된 패널
 - (c)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 (i) 본 협정에 의해 설치된 여타 위원회와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고,
 - (ii) 본 협정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

제2절 紛爭解決

제2003조 : 협력

체약국들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만

족할 수 있는 해결을 도출하도록 협력과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2004조 : 분쟁해결절차의 원용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의 분쟁해결규정들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체약국간 분쟁의 예방 또는 해결에 적용되거나 또는 타 체약국의 현행 및 제안중인 조치가 본 협정상 의무와 일치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부속서 제 2004조에 규정된 무효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005조 : GATT 분쟁해결

1. 아래의 제2항, 3항, 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동 협정하에서 체결된 협정, 또는 후속협정 모두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 분쟁해결을 청구하는 체약국은 본 협정이나 GATT의 어느 해결절차를 원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2. 특정 체약국이 본 협정하에서 원용할 수 있는 주장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거에 입각하여 타 체약국을 상대로 GATT하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GATT하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그러한 의도를 제3의 체약국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제3의 체약국이 동 사안에 대하여 본 협정하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당해 제3체약국은 즉시 분쟁해결 청구 체약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들 체약국들은 본 협정 또는 GATT하의 분쟁해결절차의 어느 한 절차의 선택에 상호 합의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한다. 만일 이들 체약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은 통상적으로 본 협정하의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3.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분쟁으로서, 분쟁해결에 응하는 체약국이 자국의 조치가 본 협정 제104조(환경 보호협정 관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당해 분쟁이 본 협정하에서 심의되어야 할 내용의 분쟁이라고 서면요청한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청구한 체약국은 당해 분

쟁내용에 관하여 그러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오직 본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4.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분쟁으로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제7장 제2절(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9장(표준관련조치)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분쟁해결에 응하는 체약국이 당해 분쟁은 본 협정하에서 심의되어야 할 내용의 분쟁이라고 서면요청하면, 분쟁해결을 청구한 체약국은 당해 분쟁내용에 관하여 그러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오직 본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 (a) 사람,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체약국에 의해 채택유지되는 조치와 관련되고; 그리고
 - (b) 환경, 보건, 안전, 보전에 관한 사실문제 또는 직접 관련된 과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안.
5. 분쟁해결에 응하는 체약국은 위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요청서 사본을 여타 체약국들과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분쟁해결을 청구한 체약국이, 위의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의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때에, 당해 분쟁에 응하는 체약국은 분쟁해결절차 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러한 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요청서를 송부받은 체약국은 진행중인 절차를 즉각 취하하고 제2007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한다.
6. 일단 제2007조에 따라서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거나 GATT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특정 체약국이 위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일단 선정된 분쟁해결절차가 다른 해결절차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원용된다.
7. 본 조에 있어서 GATT하에서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함은, GATT 제23조 2항에서와 같이 체약국이 패널 절차를 청구한 경우(request for a panel) 또는 관세평가코드 제20.1조와 같이 위원회조사(committee investigation)를 청구한 경우에 GATT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협 의]

제2006조 : 협의

1. 체약국은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타 체약국의 현행 조치, 제안중인 조치 또는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당해 체약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협의를 청구한 체약국은 체약국들과 사무국의 자국 담당 부서에 청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3. 위원회가 제2001조 4항에 따라 규정한 규칙과 절차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이상, 자국이 협의대상인 문제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제3의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들과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당해 협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4. 상하기 쉬운 농산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협의는 청구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5.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은 본 조 및 본 협정의 기타 협의규정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상호만족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모든 시도를 다해야 한다.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은 다음과 같은 협력을 하여야 한다.
 - (a) 현행조치, 제안중인 조치 또는 기타의 사안이 어떻게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완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b)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 또는 재산적 가치있는 정보에 대하여 타 체약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
 - (c) 타 체약국의 본 협정하에 따른 이익에 해를 가하는 내용의 분쟁해결은 피해야 한다.

[절차의 개시]

제2007조 : 위원회 - 주선 · 조정 · 중개

1.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이 제2006조에 따라서 다음의 기간내에 문제

의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들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a) 협의청구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30일

(b)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이 협의를 청구하거나 문제된 협의절차에 참가할 경우에는 협의청구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45일

(c) 상하기 쉬운 농산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협의는 협의청구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

(d)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이 합의하는 기타의 기간

2. 체약국은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a) 당해 체약국이 제2005조 3항 또는 4항에 규정된 문제에 관하여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후, 제2005조 5항에 따라서 본장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b) 제513조(원산지규정에 대한 실무작업단), 제765조(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 기술적협약), 제914조(표준관련 조치 - 기술적 협의)에 따른 협이가 개시된 경우

3.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한 체약국은 요청서에, 분쟁대상인 조치 또는 사안을 기재하고 본 협정의 관련된 규정을 적시해야 하며, 다른 체약국들과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당해 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4.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는 요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집되고 즉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5. 위원회는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이 상호만족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a)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술고문을 위촉하거나 실무작업단이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b) 주선·조정·중개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한다; 또는

(c) 권고를 행한다.

6.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는 본조에 따라서 동일조치에 관련된 둘 이상의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조에 따라서, 결합해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여타 문제와 관련된

둘 이상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다.

[패널 절차]

제2008조 : 중재패널의 구성 신청

1. 제2007조 4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집되고 다음의 기간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를 청구한 체약국은 서면으로 중재패널의 구성을 신청할 수 있다.
 - (a) 소집일로부터 30일
 - (b) 제2007조 6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심의절차가 통합된 경우에는, 가장 최후에 회부된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소집된 후 30일
 - (c) 협의를 청구한 체약국들이 합의한 기타 기한중재패널의 구성을 신청한 체약국은, 여타 체약국과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대하여 동 신청서를 송부한다.
2. 신청서가 송부된 후 즉시 위원회는 중재패널을 구성한다.
3. 분쟁사안에 대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3의 체약국은, 분쟁당사국들과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서면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내에 행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분쟁당사국에 의한 중재패널 구성 신청서의 송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되어야 한다.
4. 상기 제3체약국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제3체약국은 경제적 또는 상업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의 사안에 대하여 다음 절차를 개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 (a) 본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
 - (b) 본 협정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근거에 따른 GATT하의 분쟁해결 절차
5. 분쟁당사국들에 의하여 상이한 절차가 합의되지 않는 이상, 중재패널은 본 장의 규정과 모순되지 아니한 절차에 따라서 구성되고 그 직무

를 수행한다.

제2009조 : 패널위원후보명부

1. 체약국은 패널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30명의 패널위원 후보에 관한 명부를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패널위원후보명부에 등재된 위원후보는 체약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3년의 임기로 선임되며 재임될 수 있다.
2. 패널위원후보명부에 등재된 위원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 (a) 법률, 국제무역,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객관성, 신뢰성과 공정한 판단력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b) 어떤 체약국과도 독립적이며, 특수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특정 체약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c) 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제2010조 : 패널위원후보의 자격

1. 패널위원후보는 상기 제2009조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상기 제2007조 제5항에 따라서 기술고문 또는 전문가 등의 자격으로 참여한 분쟁에 관하여는 패널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2011조 : 패널위원의 선임

1. 분쟁당사국이 2개국일 경우에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 (a) 패널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b) 분쟁당사국은 패널의 구성 신청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패널의 위원장 선임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해 기간내에 위원장선임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일방 분쟁당사국이 5일내에 자국민이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c) 위원장이 선임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각 분쟁당사국은 타 체약국의 국민으로부터 2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 (d) 일방 분쟁당사국이 상기 기간내에 패널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상대방 분쟁당사국의 국민으로 패널위원후보명부에 등재된 위원후

보증에서 추첨으로 선임된다.

2. 분쟁당사국이 2개국 이상일 경우에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 (a) 패널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b) 분쟁당사국은 패널의 구성 신청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15일내에 패널의 위원장 선임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해 기간내에 위원장선임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일방 분쟁당사국 또는 같은 입장을 가진 분쟁당사국들이 10일내에 자국민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c) 위원장이 선임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분쟁해결절차에 응하는 분쟁당사국이 2명의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분쟁당사국들의 국민으로부터 각각 1명씩 선임한다.
 - (d) 특정 분쟁당사국이 상기 기간내에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위원들은 (c)의 국적기준에 따라 추첨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3.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패널위원후보명부에서 선임된다. 패널위원후보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특정 분쟁당사국에 의해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른 분쟁당사국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특정 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다고 일방 분쟁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에, 분쟁당사국들은 협의를 해야하며,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해 위원을 해임하고 본 조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제2012조 : 절차 규정

1.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절차에 관한 모델규정을 제정한다.
 - (a) 패널 절차는 적어도 일회 이상 패널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서면제출 및 항변을 위한 서면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b) 패널에서의 의견진술, 심의내용, 패널의 최초 보고서, 패널에 제출된 서면, 그리고 패널과의 기타 통신내용은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2.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패널은 상기의 모델절차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패널의 구성 신청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20일내에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패널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NAFTA의 관련규정들을 토대로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위원회 소집의 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안을 심리하고, 제2016조 2항에 규정된 바와 따라 사실판단, 결정, 권고를 내리는 것”
4.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분쟁당사국의 주장내용이 협정상의 이익의 무효 또는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패널에의 위임조건에 그러한 주장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5. 본 협정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부속서 제200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무효 또는 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가 특정 체약국의 무역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실판단을 패널에 위임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은 위임조건에 그러한 점을 명시해야 한다.

제2013조 : 제3체약국의 참여

분쟁당사국이 아닌 체약국도 분쟁당사국 및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서면 통지를 한 후, 패널의 모든 의견진술에 참가하고 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며 분쟁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을 받아 볼 수 있다.

제2014조 : 전문가의 역할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요구나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개인 및 집단으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은, 분쟁당사국들이 동의하고 또한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2015조 : 과학심의위원회

1. 분쟁당사국의 요구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동의한 경우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패널은 심의과정에서 일방 분쟁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환경, 보건, 기타 과학적 문제점에 관한 사실문제에 관하여,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과학심의위원회의 서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012조 1항에 따라 제정된 모범절차규칙에 규정된 과학 기구들과 분쟁당사국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추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과학문제의 전문가 중에서 패널에 의하여 선임된다.
3. 패널절차에 참가한 계약국은 다음사항을 제공받는다.
 - (a) 패널에 회부된 사실문제에 관한 사전통지와 당해 사실문제에 관하여 패널에 의견을 제공할 기회
 - (b) 심의위원회의 보고서 사본과 당해보고서에 관하여 패널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
4. 패널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보고서와 당해 심의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계약국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016조 : 최초보고서

1. 분쟁당사국들의 상이한 합의가 없는 한, 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하고 또한 제2014조 또는 제2015조에 따라 입수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분쟁당사국들의 상이한 합의가 없는 한, 패널은 최종 패널위원이 선임된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제2012조 1항에 따라 제정된 모범절차규칙이 규정한 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언급한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제출한다.
 - (a) 제2012조 5항에 따른 요구에 따른 사실판단을 포함한 사실판단
 - (b) 문제가 된 조치가 본 협정의 의무에 위반되는지 또는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부속서 제200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무효 또는 침해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또는 위임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된 기타의 결정
 - (c)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
3.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패널위원들이 개별적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4. 패널의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내에, 분쟁당사국은 당해 최초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5. 상기와 같이 분쟁당사국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당해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패널은 직권에 의하거나 또는 특정 분쟁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다음의 추가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a) 특정 패널절차참가 계약국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 (b) 최초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 (c)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17조 : 최종보고서

1. 분쟁당사국들의 상이한 합의가 없는 한, 패널은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 제출해야 한다.
2. 최초보고서 뿐만 아니라 최종보고서에서도, 패널은 특정 패널위원이 다수의견을 표명했는지 소수의견을 표명했는지에 관하여 공개해서는 안된다.
3. 분쟁당사국들은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2015조에 따라 마련된 과학심의위원회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일방 분쟁당사국이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서면의견과 함께,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교부해야 한다.
4. 위원회의 상이한 결정이 없는 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에 전달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패널 보고서의 이행]

제2018조 : 최종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교부받은 후, 분쟁당사국들은 분쟁의 해결에 합의해야 하고, 그러한 분쟁해결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결정 및 권고에 합치하는 내용의 분쟁해결이어야 하며, 합의된 분쟁해결내용을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 가능한 언제나 상기 분쟁해결의 내용은, 본 협정에 위반되거나 부속서 제2004조에 규정된 무효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 조치의 제거나 정지를 내용으로 해야 하고, 그러한 내용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제2019조 : 불이행 - 편익의 정지

1. 패널의 최종보고서에서 특정 조치가 본 협정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부속서 제200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무효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결정한 바 있고, 분쟁해결에 응하는 분쟁당사국이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2018조 1항에 따라 상호만족할 만한 분쟁해결방안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을 신청한 분쟁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편익을 당해 위반국에 적용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어떤 편익이 정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a) 분쟁해결을 신청한 분쟁당사국은 우선, 본 협정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부속서 제200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무효 또는 손상을 초래한다고 패널이 판단한 특정 조치 또는 기타의 사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부문과 동일한 부문에서의 편익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 (b) 동일부문에서의 편익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부문에서의 편익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3. 특정 분쟁당사국이 타 체약국들 및 사무국의 자국담당 부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 위원회는 상기 제1항에 의거한 특정 분쟁당사국의 편익정지 수준이 명백히 과도한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4. 상기항의 패널의 심의절차는 모델절차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패널은 최종 패널위원이 선임된 지 60일 이내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한 기타의 기간내에 결정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3절 國內節次와 私的인 商事紛爭解決

제2020조 : 사법적·행정적 절차로부터 발생한 문제의 해결

1. 특정 체약국의 국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른 체약국이 그러한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관이 특정 체약국의 견해를 구하는 경우, 당해 체약국은 타 체약국들 및 사무국의 자국담당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히 합의하여 적절한 의견을 회신하도록 노력한다.

2. 자국 영토내에 상기 법원 및 행정심판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동법원 및 행정심판기관에 제출한다.
3. 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체약국이든지 자국의 견해를 문제된 법원 및 행정심판기관의 규칙에 따라서 동 법원 및 행정심판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21조 : 私的權利

어떤 체약국도 여타 체약국의 조치가 본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국내법에 의하여 당해 위반국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제2022조 : 商事 분쟁의 대체적 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각 체약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의 私人간의 국제적 商事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와 기타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사용을 권장하고 촉진시킨다.
2. 상기와 같은 대체적해결절차의 촉진을 위하여, 각 체약국은 중재계약의 준수를 확보하고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특정 체약국이 1958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정”과 197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정”에 가입하고 있거나 그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체약국은 상기 제2항을 준수하는 국가로 간주된다.
4. 위원회는 사적인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적 상사분쟁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

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를 설치한다. 동 자문위원회는 자유무역지대내의 분쟁의 해결에 대한 중재 및 기타절차의 이용가능성, 이용 및 효용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회부된 일반적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권고안을 제출한다.

외국법제동향분석 93-4 NAFTA와 通商紛爭의 解決

1993年 10月 25日 印刷

1993年 11月 1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 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2,000원

